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 13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의안번호	95-1
------	------

1. 제안이유

94. 12. 20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음

◦ 구본청 : 413명

◦ 보건소 : 46명

◦ 동 : 263명

○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구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본청 : 413명
2. 보건소 : 46명
3. 등 : 263명

제 3 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등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